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1. 10. 28 선고 2020가단14145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마루

담당변호사 김윤식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준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환기

변 론 종 결 2021. 9. 16.

판 결 선 고 2021. 10. 2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목포시 C 대 274.8㎡ 중 1/2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소 2009. 1. 16. 접수 제18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피고의 형이다. D과 E은 원고의 동생이자 피고의 누나 또는 형이다.

나. 1997. 12. 15. 목포시 C 대 274.8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) 중 각 1/2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, 이 사건 토지전부에 관하여 2009. 1. 16. 피고 명의로 2009. 1. 13.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’)가 마쳐졌다.

다.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등기원인서류로 첨부된 증여계약서(이하 ‘이 사건 증여계약서’)에는 원고와 E이 2009. 1. 13.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각 지분을 무상증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요지

가. 원고와 E은 2009. 1. 13.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각 1억 2,000만 원에 매도하였다. D은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로서 법률상 무효이다.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명의 1/2지분(이하 ‘이 사건 지분’)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(주위적 주장).

나.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.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(예비적 주장).

3. 판단

가. 명의신탁 약정 여부

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D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위조 여부

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,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날인된 원고 명의의 인영은 원고의 인감도장과 동일한 인장에 의한 인영으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,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,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.

원고는, D이나 피고가 권한 없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날인했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등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반복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설령 D이나 피고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날인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,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을 제1 내지 9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와 E이 2019. 1. 13.경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소유지분을 각 1억 2,000만 원에 매도하였고, D이 원고와 E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면서 자신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바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바(대법원 2005. 9. 29. 선고 2003다40651 판결 참조)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권취득자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.

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.

4. 결 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문혜정